

<2025년도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생 모집 공고>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가. 모집분야 :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(3년 수련과정)

나. 모집인원 : 1명

다. 수련기간 : 2025년 03월 01일 ~ 2028년 02월 29일(3년)

2. 응시자격

본원 인사규정 제21조(결격사유)의 각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,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(2025년 2월말 기준) 중 다음의 가. 및 나.에 모두 해당하는 자

가.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※ 한국 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(www.kcp.or.kr)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 참고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‘대학원 임상심리 관련과목’ 중 필수(4과목 이상)/선택(3과목 이상)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3. 선발절차

가. 모집공고 및 접수 : 2024. 12. 23.(월) ~ 2025. 01. 03.(금) 17:00

나. 필기시험 : 2025. 01. 08.(수) 오후 2:00(시험시간 90분)

※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
(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개별 연락)

※ 과목 : 임상심리학, 심리평가, 정신병리, 연구방법론

※ 시험문제 중 일부는 영어지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음

※ 시험장소 :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(6동) 8층 백년홀 강당
(접수인원에 따라 장소 변경 가능, 변경 시 개별 통지)

※ 필기도구, 신분증 필히 지참

다. 면접시험 : 2025. 01. 10.(금) 오후 2:00

※ 필기시험 합격자(5배수)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하며, 면접대상자는 전남

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통지(www.cnuh.com > 전남대학교병원 > 병원안내 > 병
원소식 > 채용정보 > 채용문의 > 공지사항)

라. 최종합격자 결정: 필기시험(70%)과 면접시험(30%)의 합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
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

※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

※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함

1) 필기시험 총점 2) 면접 총점

마. 발표 : 2025. 01. 15.(수)

※ 최종합격자는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통지(www.cnuh.com > 전남대학교병원
> 병원안내 > 병원소식 > 채용정보 > 채용문의 > 공지사항)

바. 최종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: 추후 개별통지

4. 원서 접수

가.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, 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
(www.cnuh.com > 전남대학교병원 > 병원안내 > 병원소식 > 채용정보)

나. 유의사항

1) 전산 오류 등으로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.

(주소 :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교육수련실)

2) 제출서류가 추후 무효나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자 선정 및 임용이 취소
될 수 있고,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3)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(온라인)가 가능합니다.

다. 우대사항

1) 취업지원대상자 : 관련 법률(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
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)에 따라 가점 부여

2)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만점의 3% 가점 부여

*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

라. 제출서류

- 사진 1매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각 1부

※ 붙임 양식에 따라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 500자 이내로 작성

-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

-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

-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1부

- 이수과목 확인표 1부
-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석사학위(예정) 증명서 1부
- 성적증명서(대학 및 대학원) 1부
 - ※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필수/선택 이수과목을 반드시 구분하여 이수과목 확인표에 작성하여 제출
 - ※ 현재 수강중인 과목일 경우 수강신청확인서 제출
 - ※ 석사학위(예정) 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수련자격(학위 및 이수과목 수강 여부) 확인용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활용되지 않음

마. **스캔 후 첨부**

- 위 제출서류를 스캔한 후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해당 페이지에 첨부
(지원서 서식은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한 후 스캔하여 첨부)

5. 합격자 등록

가. 일 시 : 2025. 01. 24.(금)까지

나. 등록서류

- 채용신체검사서 1부 (본원 직업환경의학과 발행, 본원 인턴 수료자는 제외)
 - *원무과 접수 → 직업환경의학과 방문 및 검사 → 채용신체검사서 익일 발급
 - 교육수련실에서 일괄 수령(본인 방문 불필요) *검사 전 8시간 금식
- 예방접종 확인서(수두, MMR, 파상풍, 디프테리아, 백일해)
 - 수두: 최근 5년 이내 2회 예방접종 or 항체검사결과표
 - 파상풍과 디프테리아, 백일해: 최근 10년 이내 Td아닌 Tdap 예방접종 확인 필요
 - *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(<https://nip.cdc.go.kr/>)에 접속하여→ 전자민원 서비스 → 예방접종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본인 외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)
- 급여수령용 통장사본 2부 (광주은행 및 새마을금고 각 1부)
- 근로계약서 1부 (교육수련실 교부)
-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1부 (교육수련실 교부)
- 공정채용 확인서 1부 (교육수련실 교부)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1부 (교육수련실 교부)

6. 합격 취소

- 가. 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
- 나.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나거나 하자가 있을 때
- 다.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
- 라. 본원 인사규정 제 2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

7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긴급연락처(휴대폰 번호)를 반드시 기록요망
- 나.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
- 다.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원서접수 불가능
- 라.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블라인드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, 직무와 무관한 지원자 개인 정보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성별, 가족 관계, 출신지, 출신학교 등을 직·간접적으로 기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자기소개서 미작성시 불합격 처리
- 마.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
- 바.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,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본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사.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음

◇ 문의처

- 가. 원서 접수 관련 : 전남대학교병원 교육수련실(T.062-220-6084)
 - 나. 기타 문의 :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심리실(T.062-220-5832)
- (필기시험 문제 내용, 정신건강 이수과목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음)

2024. 12. 23.

전 남 대 학 교 병 원 장

〈참고〉 본원 인사규정 제 21조(결격사유)

인사규정 제21조(결격 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,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9.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11. 육체적·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12. 전염성 질환자
13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4.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